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2.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선발된 후,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고 현장수습 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p>
<p>제10조(협의회)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협의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1조 (생략)</p>	<p>제10조 (제정안과 같음)</p>